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
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협회 설립인가 사항의 공개, 인가 취소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→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나. 자구 변경(안 제1조/제2조/제3조)

- “데이터 기반” → “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”

다. 인공지능·데이터협회의 설립인가 공개 등(안 제4조 신설)

- 공시 기능 확보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협회 설립을 인가한 경우, 그 내용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 항목과 방법을 정함(제1항)
-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협회 설립 취소사유를 정함(제2항)
- 설립인가 취소, 정관 변경, 해산 등 협회 운영 관련한 주요 변동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함(제3항)

라. 별지 서식 변경

-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‘데이터 제공 요청서(제1호)’를 개편하고,
서식에 ‘인공지능’ 문구를 추가함(제2~6호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일부개정법률안

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”을 “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을 “「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공공 인공지능·데이터협회의 설립인가 사항 등의 공개) ①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1. 협회의 명칭

2. 설립인가 연월일
3. 설립 목적
4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5. 주된 사업
6. 대표자의 성명

②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설립 인가시 주무관청이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
2.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업무 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
3. 「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·장부의 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.

1.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
2. 협회의 정관 변경 사항
3. 협회의 해산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

11조제2항”을 “ 「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2항”을 “ 「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중 “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2항”을 “ 「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중 “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”을 “ 「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 중 “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”을 “ 「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법은 2026년 12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데이터 제공 요청서

「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귀 기관에서 보유·관리 중인 데이터의 제공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.

신청인	성명		소속	
	부서명		전화번호	
	전자우편주소			

요청 명세	데이터 소관 기관/부서		사전협의여부	여/부
	데이터 명칭			
	데이터 항목			
	데이터 이용기간			
	데이터 이용목적			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기 관 의 장 귀하

210mm×297mm(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</u>	<u>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</u>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의 제 공 등) ① 공공기관의 장은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 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 에 따른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 폼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1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요청서 를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(이하 “보유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② 보유기관의 장은 「데이터기 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 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	제1조(목적) ----- 「인공지 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----- -----. 제2조(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의 제 공 등) ① ----- 「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----- 「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 한 법률 시행령」-----

11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 기간 연장 통보서를 데이터 제공을 요청한 공공기관(이하 “요청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.

③ (생략)

<신 설>

[illegible]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조(공공 인공지능·데이터협회의 설립인가 사항 등의 공개)

①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라
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의 설립
을 인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
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거나
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
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1. 협회의 명칭

2. 설립인가 연월일

3. 설립 목적

4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
5. 주된 사업

6. 대표자의 성명

②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서
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
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
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설립
인가시 주무관청이 불인 조건
을 위반한 경우

2.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업무
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의 사
업을 수행하거나 공익을 해치
는 행위를 한 경우

3. 「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
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
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1
항에 따른 관계 서류·장부의
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소속
공무원의 검사를 방해 또는
기피한 경우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
개하여야 한다.

1.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설립
인가 취소

2. 협회의 정관 변경 사항

3. 협회의 해산